
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

2026. 7. 16.

순서

I. 상반기 주요 성과	1
II. 핵심 추진과제	3
1. 역점 과제	3
【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】	
①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국민 고충 해소	3
② 국민 소리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	6
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 】	
③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	8
④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	10
2. 국가정상화 과제	11
3. 기타 현안과제	11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국민 고충·불편 해결 (국정16-5)

- (고충민원) 집단민원 101건을 해결하여 약 2만 5천명의 국민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, '26.1.~6. 6,749건의 고충민원을 처리

〈주요 우수사례〉

- ▶[철원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요구' 해결('26.4)] 민·관·군 협의체 운영, 유실지뢰 제거, 마현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침수 및 유실지뢰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(약 329명) 안전 강화

※ 집단갈등조정국 신설('26.1.27.) 이후
'중앙정부 반복민원'('25. 30건 이상
민원 제기자의 '26. 제기 건수)은
전년동기 대비 37,050건 감소

< 중앙정부 반복민원 제기 건수 (단위: 건) >



- (행정심판) '26.1.~6. 10,177건의 심판 청구건 처리 전년동기 대비 18.2%↑

〈주요 우수사례〉

- ▶[행정심판의 장벽을 허물다]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서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지원하는 모바일 시스템 도입('26.1.), 저시력자 등 글자를 읽기 어려운 국민이 재결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서비스 개통('26.3.)

- (제도개선)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해 '26.1.~6. 13건 개선 권고

〈주요 우수사례〉

- ▶[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('26.6.)] 금융재산 상속을 위한 제출서류·서식 등 표준화, 통합 접수창고 운영·시스템 연계 등 원스톱 금융재산 지급체계 구축 권고
▶[고속도로 통행료 개선('26.5.)] 착오진출 등으로 단시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권고

2 민원 대응기반 구축 및 국민소통시스템 개선 추진 (국정16-4)

- (민원 대응기반)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기반 및 협업체계 마련

- 국민·현장 중심 민원 해결을 위한 「민원처리·소통 확대 방안」* 수립('26.3.), 「집단갈등민원·특이민원 해결 로드맵」** 마련('26.6.)

* 3대 전략(▲민원발생 예방 ▲효과적 민원 대응 ▲정부차원의 이행관리) 14개 이행과제 수립

** ▲집단갈등·특이민원 해결 전략·기획과제 ▲집단갈등민원 관리과제(6대 분야 130개) 등

-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* 지정으로 대응창구 일원화 및 자체 해결역량 향상

* (지정 현황) 중앙부처(51), 교육청(16) 지정 완료 / 지방정부(광역 12, 기초 144) 64.2% 지정

- **(국민소통시스템)** AI 국민신문고 및 상담번호 110통합 시범서비스 도입
 -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데이터의 맥락과 의미를 AI가 이해하여 분석하고 처리하는 AI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* 실시('26.2. 식약처·국토부·인천시·시흥시)
 - * ▲질의민원에 대한 답변 초안 생성·추천, ▲반복 접수된 대량의 유사민원 식별·병합, ▲급증이슈를 포착하는 AI 민원분석 기능으로 국민과 신속히 소통
 -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6개에서 21개로 확대('26.5.)
 - ※ 기관별 대표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검색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

3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및 반부패 제도 합리화 (국정16-1,2)

- **(신고·보상·보호)**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보호·보상을 강화
 - 신고사건(부패행위·공익침해행위·공공재정 부정수급·행동강령 위반 등) '26.1.~6. 12,786건을 처리 전년동기 대비 93.3%↑ 하고, 대규모 납품 비리 적발('26.6.)

〈주요 우수사례〉

▶[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실태조사로 175억원 납품비리 적발] 12개 부대 계약 80건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무자격업체가 저가의 전기설비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약 77억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, 해당 업체의 전체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195건(약 175억원)으로 추산 ⇒ 관련자 처벌 및 비리 추가 적발 등을 위해 관계기관 이첩 국방·경찰·조달
 - 보호사건 '26.1.~6. 901건을 처리 전년동기 대비 171.4%↑ 하여 49건을 인용 전년동기 대비 32.4%↑ 하고,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보상금(20억) 지급

- **(반부패 제도)** 국내·외 상황에 발맞춰 반부패 제도 합리적 운영
 -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 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을 표준화하여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('26.4. 국무총리 훈령 제정)
 - ※ 채용심의기구 설치·운영, 채용공고 변경 금지, 외부심사위원 위촉,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 등
 -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외부강의 강의로 상한을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(개정 전: 최대 60만원)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환경 조성('26.6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)

II. 핵심 추진과제

1 역점 과제

< 하반기 정책방향 및 역점과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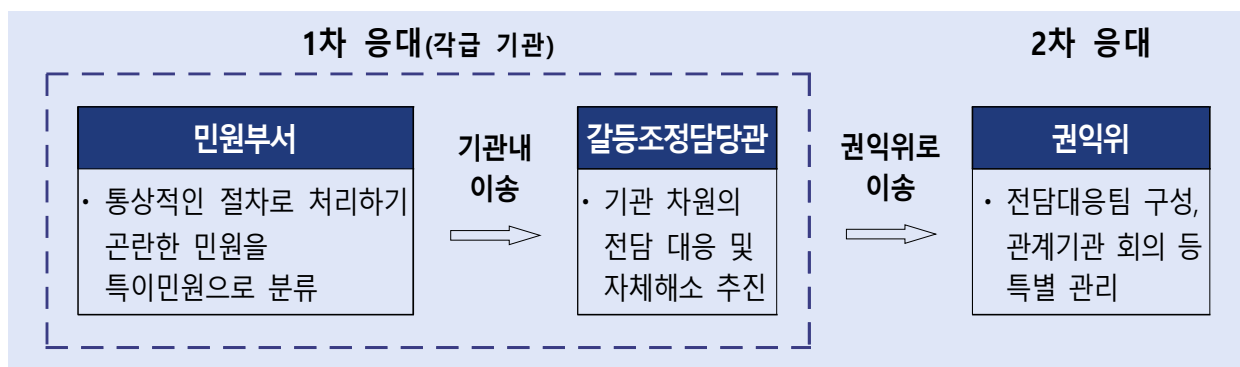
정책 방향	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	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
역점 과제	①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국민 고충 해소 ① 장기화된 고충민원의 전략적 해결 ②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권익 구제 ② 국민 소리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① 청년 및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 ② 일상 속 불편·불합리 유발요인 개선	③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①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②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④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①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 ②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조성

①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국민 고충 해소

① 장기화된 고충민원의 전략적 해결 (국정16-5)

- (특이민원* 감축) 일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해
경청과 설득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('25년 140만건→'30년 70만건^{5년 내 50%↓})

* 민원신청 방법·분량·내용 등이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민원



- (1차 응대)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* 책임 하에 기관 차원에서 전담
대응 및 자체 해소, 자체 해소가 어려운 경우 권익위로 이송

* 기관별 고충민원 접수·처리 현황 점검 및 교육 등의 업무 전반 총괄 관리자

- 전국 순회교육('26.下. 8회), 워크숍('26.7.),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
전문교육과정(상시)을 통해 기관 자체 대응 역량 지원

- **(2차 응대)** 각급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특이민원을 권익위에서 집중 관리
 - **민원인별 전담팀**(권익위 조사관-시민상담관*-기관 담당자 등)을 구성하고, 주요 사안은 ‘관계기관 집중회의’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
 - * 심리·법률·행정 분야 상담 및 민원 담당자 지원을 위한 **민간 전문가**(’26.3., 112명 구성)
 - ※ ’27년 중 특이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정규 인력 **100명 채용 추진**

□ **(집단민원 해결)**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등을 당사자 간 조정, 합의 등을 통해 신속 해결(’26.下. 130건 목표^{상반기 대비 30%↑})

- **(로드맵 이행)** 6대분야 130개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 목표에 따라 해결
 - ※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기획과제로 조사하여 구조적 해결

< 6대 분야별 단계별 목표 및 주요 과제 >

단계별 감축 목표				주요 관리과제
교통·기간시설	18	5	11	• 수도권 철도 건설 안전성 확보
환경·자원순환	9	2	11	• 청주 하수처리시설 설치 반대
주거·도시개발	7	3	10	• 인천 용유지구 이주대책 요구
산업·국방민생	8	3	7	• 고양 재개발정비구역 내 군사시설 매각 요구
교육·문화복지	15	5	3	• 부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
에너지·공공공급	5	6	2	• 영암 송전선로 건설 반대

※ **단기** : 연내 해결(62건) **중기** : ’26.~’27. 중 해결(24건) **장기** : 지속적인 해결방안 검토(44건)

- **(선제적 관리)** 각급 기관이 접수·처리 중인 집단민원 현안에 대해 권익위가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민원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정 추진
 - ※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 중(’26.2.~)
- **(지방옴부즈만 협업)** 지역 현안·주민 숙원 관련 민원은 **시민고충처리위원회***와 협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 및 민원인의 수용도 제고
 - * 지방정부에서 자체 운영 중인 지방 옴부즈만(권익위와 동일한 권한기능을 수행, ’26.6. 기준 108개)으로, 처분청이 아닌 제3자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수용성 제고 가능
-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와 합동 기획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 등 생활밀착형 주민고충 해결방안 모색(’26.9.~12.)

②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권익 구제(국정16-5)

- **(취약계층 불편 해소)**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*의 민원을 집중 관리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('26.7.~)

* 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, 청년, 한부모·조손(조부모와 손자)·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

- **(발굴·관리)** 무료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서비스^{대한행정사회 협업}를 통해 민원 제기를 돕고, 전담 조사관과 위원을 지정*하여 신속 처리

* 주택, 보훈, 금융, 복지·노동, 경찰, 재해 대응 분야를 우선 지정, 필요시 추가 지원

- **(지원연계)** 복지사각지대로 판단될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, 주거·금융·취업 등 맞춤형 지원 실시^{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}

- **(달리는 국민신문고 확대)** 인력을 총원하여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촘촘한 행정 실현('26.下. 74회^{상반기 대비 40%↑})

- **(대상·지역)** 소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원분석을 통해 청년·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, 농·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발굴·선정하여 다양하게 운영
※ 농·어촌지역 시·군 18회, 청년 집중상담(예: 채용박람회·예비군훈련장) 등 맞춤형 56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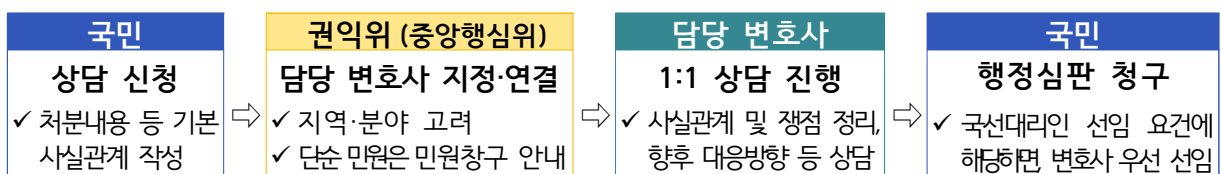
- **(현장소통)** ^{오전}민원 상담과 ^{오후}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삼아, 국민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국민의 삶 곁으로 먼저 방문하여 소통

※ (운영 예) [오전] 전체 : 상담장 → [오후] 1조 : 민생현장, 2조 : 복지센터, 3조 : 청년몰

- **(행정심판 청구 지원)**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 전부터 법률적 도움 확대

- **(무료 법률상담)** '행정심판 상담전문변호사단'을 구성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다투려는 국민에게 행정심판 청구 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('26.7.~)

< 행정심판 상담서비스 흐름도 >



- **(국선대리인 지원)**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전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을 '행정심판을 청구한 자'에서 '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' 등으로 확대^{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 중}

2 국민 소리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

1 청년 및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(국정16-3,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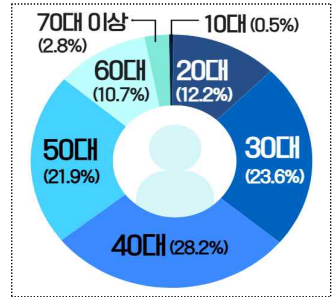
□ **(정책 패널 다양화)** 정책참여 플랫폼인 ‘국민생각함’에 청년과 청소년 정책 패널을 운영하여, 청년·청소년을 정책 주체로 육성하고 정책 효능감 제고

- **(구성)** 국민패널^{’26.6.기준 19,222명} 중 청년(19-34세)을 구분하여 ‘청년 정책 패널’을 신설

※ ‘청소년 정책 패널’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’26.4. 신설(현재 263명)

- **(의견수렴)** 청년·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(수시), ‘정책 아이디어 공모전’을 통한 정책 발굴 등 추진

< 국민패널 연령별 현황 >



□ **(2030청년자문단 활성화)** 2030청년자문단이 다양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대변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정책 제안 활동 수행

- **(대표성)** 사회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청년 관련 커뮤니티·현장과의 소통 강화, 청년인턴과의 연계 등으로 다양한 청년세대 의견 반영

※ 쉬었음 청년 지원단체와의 연계,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활용 등

- **(정책제안)** 현장조정회의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자문단 운영 활성화로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정책제안 수행(’26.下 40건 제안 목표)

□ **(민원분석 강화)** 청년세대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(가칭‘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’)을 통해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방향 제언

- **(분석)** 청년이 제기한 민원(’25.7.~’26.6. 약 41만건)을 토대로 학교·병역·주거·육아 등 청년의 정책수요와 민원제기 유형을 집중 분석(’26.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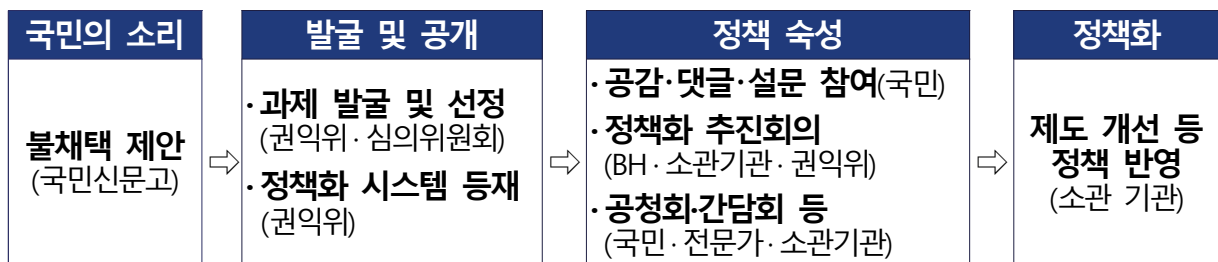
- **(활용)** 해결이 필요한 생활속 불편·고충, 청년이 원하는 정책방향 등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여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효과 구현

< 청년 주요 민원 분야 예시 >

학업·취업	[병역] 군 복무, 군 경력증명서, 예비군 훈련 [학교] 대학생활, 기숙사 [자격증]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이의제기 및 질의
생활 불편	[주거] 주거지원, 보증금 미반환 [교통] 버스이용 불편, 버스노선 신설 요청

② 일상 속 불편·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(국정16-4,5)

- **(국민제안 정책화)**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^{가칭}「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」을 신설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 구축('26.7.)
- **(과제선정·숙성)** 소관기관이 불채택한 국민제안('25. 71,681건^{전체의 91.2%})을 재검토하여 ▲우수 아이디어 발굴, ▲공론화로 개선방향 모색
- **(정책화)**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



- **(국민체감 제도개선)** 안전 관리 사각지대,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, 주거 불안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구조적으로 해결

<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 >

분야	문제점	개선방향(안)
안전	·(건축물) 대형건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, 안전 등급만 공개	⇒ 도로, 철도, 교량 등 다수이용 건물에 대한 현장점검 자료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확대
	·(통학로) 전국 초·중·고 등·하굣길 안전 위협 요인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	⇒ 복잡한 신호체계 개선,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안전한 등·하굣길 조성방안 마련
생활	·(위반 고지)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경우 종이고지서 중심으로 운영되어 송달지연, 오배송, 그에 따른 체납 우려 등 발생	⇒ 세외수입의 고지부터 납부까지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
	·(통합 폐업신고) 소상공인 등이 직접 방문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하며,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인한 처리 누락 발생 등	⇒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관할 기관 간(시군구↔세무서) 행정정보 시스템 연결 강화 등
주거	·(임대주택) 임차인 사망 후 상속권자가 승계받을 때, 실거주 증명이 주민등록만 인정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계 곤란	⇒ 주민등록 외의 방법으로도 실거주 증명 가능하도록 증명 방법 다양화
	·(사회인프라)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	⇒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의 독립성·객관성 강화, 참여 주민의 대표성 강화 및 속의 과정 도입 등

3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

①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(국정16-1)

□ (부패행위 엄단)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부패 예방·적발 강화

- (구조적 부패)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 규정 등을 개선하여 부패 재발 가능성 해소

< '26년 하반기 실태조사 분야(안) >

- (입찰비리) 모듈러 교실 구매 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 및 입찰비리 실태조사
- (수당 부당지급) ▲지방정부에서 서울·세종으로 파견온 협력관들의 초과근무수당·주거비 등 지급내역, ▲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 경과기관의 국외여비·업무추진비 지급내역 등 실태조사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
 - 모듈러 교실(조립식 임시교실) 나라장터 카탈로그 계약 관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고,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공공재정의 손실이 초래된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
- ⇒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동일유형 신고가 재발되기 전 문제행위를 적발하여 신고처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,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

- (신고 처리) 신고사건은 조사권 확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
 - 더 실질적인 사건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력 확보, 피신고자 자료제출·의견진술 요청 근거 마련('26.7.~^{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})

□ (고위직 비리 근절)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, 지방정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규범 준수와 청렴한 직무수행 독려

- (이해충돌 방지) 고위공직자 임용 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자료제출자 과태료 부과,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·관리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('26.8.^{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})
- (사전 안내)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신규 취임 고위공직자 준수 사항, 지방부패 관련 주요사항 안내('26.8.^{243개 지방정부 감사관 대상})
- (처벌 강화)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'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'에서 '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'으로 상향('26.9.^{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})

②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(국정16-2)

- **(신고자 보상 확대)**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불법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충분히 보상하여 신고 활성화
 - **(보상금액 상향)** 부패행위뿐 아니라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까지 수입회복액의 30%*까지 보상금 지급(시행령 개정, '26.9.)
 - * (현행)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~30% 지급 → (개선) 수입회복액의 최대 30% 지급
 - 부패방지권익위법, 청탁금지법, 공공재정환수법,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보상금 상한(30억원) 폐지
 - **(보상기준 통일)** 중앙·지방정부 보상금제도^{2,025개} 전반의 운영 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급기준 및 절차 관련 표준 매뉴얼·조례안 등 배포('26.8.)
 - **(보상대상 확대)** 개별법상 규정이 없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 추진
 - ※ (제정내용) 불법행위 신고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상 일반원칙과 절차 등
- **(신고자 보호 강화)** 국민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여,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*(보호기준 일원화)** 부패 신고,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령별 보호 수준의 차이 해소
 - ※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('26.3.~)
 - ▶ **(부패방지권익위법)** 불이익조치 시 권익위 징계 요구를 따를 의무 신설, 신고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, 신고금지 규정이 무효임을 명시
 - ▶ **(공익신고자보호법)**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도입,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사유를 조사 중단 및 다른 법률 구제절차 진행 중 등으로 축소
 - **(최적의 신고자 보호)**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방안을 활용하여 불이익 해소
 - **(책임감면)** 신고자가 신고 관련 형사재판 등을 받는 경우,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
 - **(이행점검)** 신고자 보호에 관한 부적정 사항 확인 시 고발조치,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등 보호결정 이후 사후관리 철저
 - **(화해권고)**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첨예한 갈등을 종국적 해결

4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

①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 (국정16-1,3)

- **(청렴윤리경영 확산)**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·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경쟁력 제고
 - **(진단·컨설팅)** 공기업·민간기업 등 20개 기관^{한국전력공사, 한국도로공사, 네이버, 롯데홈쇼핑 등} 대상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실시('26.下)
 - **(로드맵)** 청렴윤리경영 진단 본격 시행('27.^{시범}, '28.^{본진단})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, 진단체계, 확산방안을 담은 로드맵 마련('26.12.)
※ 청렴윤리경영 진단 세부내용 마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('26.7.~)
- **(민간 청탁 금지)**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여 민간부문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('26.9.^{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})
 - **(금지행위)** 인사·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 청탁하지 못 하도록 규정
 - **(제재규정)**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 '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'

②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조성 (국정16-3)

- **(청렴교육 확대)**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청렴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·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유도
 - **(맞춤형 교육)** 초·중·고 대상 게임·체험식 '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' 운영('26.下^{51개교}), 대학생 대상 취업·AI·직업윤리 등을 주제로 청렴특강 실시('26.下^{10회})
 - **(교육 기반)**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·조사 기능을 강화하고, 청렴 교육과정 반영 근거 마련('26.7.~^{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심의 지원})
- **(채용 공정성 제고)** 채용 실태 점검 및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
 - **(실태조사)**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,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후속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('26.12.)
※ (후속조치)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피해자 구제 등 조치
 - **(이행점검)** 중소중앙행정기관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('26.7. 시행)의 주요내용을 자체 기준에 반영했는지 점검하고, 미비사항 신속 정비('26.7.)

2 국가정상화 과제

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·감독 강화(국정16-3, 7대 사회악 세부과제)

※ 공공재정지급금 :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

- ▲부정수급 실태 점검, ▲취약분야 집중관리, ▲효율적 환수제도 마련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철저 대응
 - (실태점검) **주 행정기관(311개)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 점검('26.5.)에 따른** 오지급·부정수급의 환수 등 제재 실적 확인 및 미흡 시 처분 요구('26.8.)
 - (집중관리) **현장 실태조사(지방체육회 보조사업 대상, '26.6.~7.)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('26.10.) 등을 통해 취약분야 중점 관리**
 - (환수강화) 권익위 처분 권고의 이행력 제고 및 환수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('26.8.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, '26.10. 동법 시행령 개정)

3 기타 현안과제

① AI 국민신문고 구축(국정16-4)

- (AI 국민신문고) 국민은 더욱 쉽게 목소리(민원·제안)를 내고, 공직자는 국민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AI활용 기능 도입(~'28.)
 - 국민신문고 전체 이용기관(1,498개) 민원에 AI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시스템 구축·운영방안 도출(업무절차 재설계/정보화전략계획 진행, '26.2.~8.)

쉬운 소통	민원작성	▶ 국민이 AI와 대화하면 신청취지에 맞는 민원문서 작성 제공
	정책제안	▶ 일상속 불편사항을 AI에 말하면 정책제안서 작성 제공
스마트한 민원처리	자동배정	▶ 민원의 취지·내용을 분석하여 소관 기관·부서로 자동 배정
	긴급민원	▶ 재난·안전 민원을 자동 식별하여 담당자에게 우선처리 요구
	효율처리	▶ 반복·중복민원 자동 병합, 유사사례 및 법령 제공, 답변 초안 제공
의미기반 민원분석	분석강화	▶ 각급기관별 대화형 AI 민원분석 체계 구축, 지역별·분야별 이슈 포착
	신속대응	▶ 소관기관에서 민원으로부터 파악된 현장 수요 즉시 대응

②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

- (국민콜 110) 국민이 정부·공공기관 전화번호(현행 697개)를 찾을 필요 없이 정부와 쉽게 소통하도록 비긴급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(~'27.)
 - (정부 114화) 110에서 안내·연결 가능한 번호를 현행 150개에서 주요 공공기관 300개(~'26.10.), 중·소기업·공공기관 697개(~'27.)로 단계적 확대
 - (대표번호 통합)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현행 6개에서 21개(현재 시범운영 중, ~'26.12.), 34개(~'27.)로 순차적으로 확대